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02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품 보관, 분류, 유통 용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적층식 랙 시설물에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 위험성 증가 적층식 랙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고 소방관련 법규 개정 사항 반영,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층식 랙에서 화재유발 작업행위 작업금지(별표1)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시 '화재예방 부문'에 적층식 랙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제한하고 관련정보를 관리하도록 항목 신설

나. 소방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현행화 반영(별표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시행 '22.12.1)에 따라 법률사항 반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동화재속보 설치대상에 창고시설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문 삭제

다. 용어의 명확화(제2조)

- 화재안전계획서, 적층식 랙, 방문자 등 모호한 용어에 대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thkim0528@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044-201-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